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22호 2014. 2. 24.(월)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014-278호 사천시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정 —— 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2)

훈 령

사천시 훈령 제 2014 - 278호

사천시 어업지도선 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안전운항 및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어업지도선의 관리·운용과 지도선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리부서) 어업지도선의 재산관리와 어업지도선 운용 및 승무원 복무에 대한 사항은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제4조(어업지도선의 정박지) 어업지도선의 주 정박지는 삼천포 항(신항)으로 한다.

제5조(어업지도선의 임무) 어업지도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
2. 어선의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 지도
3. 그 밖에 어업지도에 필요한 업무

제6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승무원”이란 어업지도선에 승선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3)

- ② “직무분담표”란 선박의 임무 수행 및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 승무원의 직무 및 배치 장소를 명시한 도표를 말한다.
- ③ “운용계획서”란 선박의 운용실태를 운항·대기·수리·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기간을 명시한 계획서를 말한다.
- ④ “선용품”이란 선내 용품으로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부속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 ⑤ “장비품”이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항 및 안전에 꼭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 ⑥ “비품”이란 각종 공구류 및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비치물품을 말한다.
- ⑦ “정기수리”란 어업지도선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선체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⑧ “긴급수리”란 예기치 아니한 고장 발생시 이를 긴급 정비하는 수리를 말한다.
- ⑨ “자체수리”란 승무원이 자체에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와 간단한 고장을 직접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⑩ “자체교육”이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장 책임 하에 선내나 어업지도선 대기실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제2장 승무원의 복무

제7조(책임완수 및 근무기강 확립) ① 승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4)

② 선장은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선박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장의 직무와 책임) 선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 명령권 : 선장은 지도선을 지휘·감독하여 소속 승무원의 배치 및 출동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직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출항 전 검사 :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 가능여부와 항해에 필요한 장비·인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선장은 출항할 때부터 직접 조타(조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장시간 운항할 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갑판원에게 조종시킬 수 있다.
4. 재선의무 : 항해 중에는 선박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 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선박 위험시의 조치 : 선장은 지도선과 승무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선박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선장은 「국제해상 출동예방 규칙」, 「선원법」, 「선박법」, 「선박안전 조업 규칙」 등 각종 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 확인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7. 선장은 출항 준비가 완료되면 출동 명령시간을 준수하여 출항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정 항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착 시 까지 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선장은 선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5)

제9조(임무) ① 지도선의 승무원은 어업인의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공·사를 분명히 하며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태만자의 조치) 선장은 승무원 중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과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승무원의 임무 및 근무방법) ① 승무원은 지도선 운항과 지도 주요 업무를 보조한다.

② 승무원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선내나 어업지도선 대기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출동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장비를 책임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부서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부

가. 항해 및 출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선체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다. 신호 및 기상, 해황에 관한 사항

라. 운항일지 운항기록부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

마. 항해부의 비품 등 그 밖의 항해에 관련된 사항

2. 기관부

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기관정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6)

다. 유류 및 청수에 관한 사항

라. 선내의 전기 및 기관부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관부의 비품 등 그 밖의 기관에 관련된 사항

3. 통신부

가. 무선통신, 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

나. 음어,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통신기기의 보존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마. 무선통신 일지, 통신부 기록 등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

⑤ 부서별 업무담당 책임자는 그 직급에 따라 선장이 지정한다.

제3장 운항 및 관리

제12조(지도선의 안전관리) ① 선장은 선박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중에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박안전 사고란 선체파손, 기관 및 장비의 고장과 인명사고 등을 말한다.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수산과장에게 보고하고, 사고경위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수칙) 선장은 지도선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및 각종 기기·장비·비품 등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고 승무원에게 주지시켜 항상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7)

제14조(안전교육) ① 선장은 월 1회 이상 승무원에게 운항 및 선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지도선의 안전운항, 장비취급, 안전수칙 등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제15조(비상배치) 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 하기 위한 기준과 화재·인명구조·황천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여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기상악화 시 지도선 대피기준) 해상기상 악화 시,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 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태풍 내습 가능성이 있는 계절에는 라디오 등 방송망을 통해서 기상변화에 유의하고 태풍 내습 전, 지도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상특보에 따라 기상상태가 악화될 때에는 지도선 안전을 위한 장비 또는 비품을 점검하고 전 승무원을 대기토록 하여 피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상악화 시, 지도선 대피 기준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규제사항에 따른다.

제17조(기기의 관리 책임) ① 각종 장비·품에는 정·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전 승무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선 출동) ① 지도선은 월별 출동계획에 따라 운항하되 운항 명령서에 따라 운항한다.

② 지도선은 선장의 책임 하에 항상 안전하게 정비 관리하여 상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8)

③ 정박 중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목적 외 지도선의 운항이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과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활동 중 준수사항) ① 선장은 운항명령서에 지시된 해역에 도착하여 지도임무에 임하여야 하며 지시받은 해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출동 기간 중에 임의로 출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선장이 인명 및 선체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20조(항해 중 안전관리) 항해 중에는 주변을 예의 주시하여 선박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1조(정박관리) 승무원의 퇴근 후와 공휴일 등에 대한 어업지도선 안전과 정박 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방범서비스, 노세트 확인 출동 서비스, 설비이상 통보)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제22조(보험 및 공제가입) 지도선은 공유재산으로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관공선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선의 수리 및 건조

제23조(정비 및 수리) ① 어업지도선의 정비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및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② 정기수리는 1년마다 상가·선체도장·갑판·기관 및 통신 등의 수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상가·선체도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긴급수리는 기계와 장비·선체의 파손 등으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④ 자체수리는 기계와 장비의 파손·노후·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적 또는 경미한 고장 등에 대한 보유 부속품을 사용하여 자체 수리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9)

③ 긴급수리는 기계와 장비·선체의 파손 등으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④ 자체수리는 기계와 장비의 파손·노후·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적 또는 경미한 고장 등에 대한 보유 부속품을 사용하여 자체 수리한다.

제24조(수리신청) ① 수리신청은 자체 능력으로 수리 불가능한 사항만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수리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수리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감독) ① 지도선 수리의 원활한 집행과 완벽한 수리를 위하여 공사감독관으로 지정된 승무원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과정을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수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수리중의 인력운영) 선장은 정기수리 기간 중 수리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휴가 등을 조정하여 각 부서별로 승무원을 배치하고 지도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수리에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자체정비) ① 선장은 승무원의 직무분담에 따라 각종 기기 및 장비를 사전계획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파손·노후·작동불량을 방지 및 예방하는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지도선의 자체정비 책임은 선장에게 있으며 승무원의 자체 정비에 대하여 지휘·감독·확인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0)

제28조(건조계획 수립) ① 지도선 건조일 기준 25년이 경과되어, 선박 노후가 심하여 안전운항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건조비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업지도선 안전도 확인 용역」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만,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 등 선박 사용의 내용연수, 교체주기 등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한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련 규정 개정과 자금운영방안 마련,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마련 시, 이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선의 보급

제29조(출동급식비 지급) 지급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 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30조(선용품의 보급기준) 선박관리용 소모품은 선장의 청구에 따라 구입 후 수불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피복류 지급) 어업지도선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며, 구입 피복류는 자연소모품으로 간주한다.

제32조(유류의 검수) ① 유류의 검수는 구입전표에 명시된 유종과 유량을 공급 받아야 하며 검수자는 선장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1)

② 항해용 유류는 선장이 수시 점검하여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유류공급) ① 선장은 귀항 즉시 운항시간에 의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류공급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류는 어업지도선의 유류적재 용량의 90퍼센트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의 선박운항 및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유류 및 선용품의 관리) 선장은 유류 및 선용품을 성실히 관리하여 선박운항 및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문서의 관리) ① 비밀문서는 이중문의 견고한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 관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따라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비치서류)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선내나 어업지도선 대기실에 비치된 일지를 매일 정확·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운항일지 [별지 제1호서식]
2.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선박 수리(정비)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선박제원현황 [별지 제4호서식]
5. 운항명령서 [별지 제5호서식]
6. 직무 분담표 [별지 제6호서식]
7. 기타 필요한 부책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2)

제37조(준용기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지방
공무원복무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3)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운 항 일 지

결	담	당	기관장	선	장
재					

선 명: 경남 233호 요일

운 항 일 지	08:00 선박위치					선수홀수:	선미홀수:
	출 항	장소:					시각:
	입 항	장소:					시각:
	항해시간	일계: 누계:	항해거리 (마일)		일계: 누계:		
기 상	시간	천기	풍향	풍속	파고	시정	특기사항
	00:00						
	04:00						
	08:00						
	12:00						
	16:00						
	20:00						

구분	유종	연료유	윤활유	기타유	청 수
	이 월 량				
금일수령량					
소 비 량	주 기				
	보 기				
	계				
잔 량					

기관명	일 계	누 계
주 기	1	
	2	
발 전 기	1	
	2	
기 타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4)

(뒷면)

시 간	기 재 사 항
08~12	
12~16	
16~20	
20~24	
24~04	
04~08	
특이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6)

[별지 제3호서식]

선 박 수 리 (정 비) 대 장

1. 선명 : 경남 233호 소속 : 사천시(해양수산물) 건조일 : 1996. 5.

2. 수리기록

일 시 (월·일-월·일)	수리(정비) 분 야	수리(정비) 부 분	수리(정비) 내 용	수리(정비) 이 유	수리(정비) 가 액	수리(정비) 구 분	수리(정비A) 업체 및 수리 (정비)장소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7)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선 박 제 원 현 황

소 속 : 사천시 해양수산과

작성일자 : 년 월 일

선 명	경남 233호	선박번호	9605033-6482408		구선명			
총톤수	22톤	선 질	FRP		용도	어업지도선		
선적항	삼천포항(신항만)	항해구역	경상남도 일원		작전등급			
진수년월일	1996. 5.	조선지	경남 고성		조선자	주)세모조선		
측도	장 : 20.50M		폭 : 4.20M		심 : 1.98M			
속력	최대 : 28노트		항해 : 23노트		항속거리 :			
흘수	(만재시)선수:		선미:		(경하시)선수: 선미:			
항해장비	장비명	형 식	규 격	수 량	제작회사	제조일	설치일	
	조타기	수동유압		1	대동정밀			
	나침의	테이블형	125∅	1	주)진항계기			
	레이다	RA771UA		1	주)삼양무선			
	G.P.S	아쿠아		1	주)삼양전자			
	탐조등			1	태일전기			
	확성기	PA1100		1	주)해양전자			
	소화전	K·R		2				
	양카		40kg	2				
	구명정	15인승팽창식	K·R	1				
추진기	형식 : 나선추진		규격 : 820∅		수량 : 2조			
통신시설	종 류	전파형식	출 력	제작회사	기기명칭	수량	주)수	설치일
	SSB	J3E.H3E	30W	주)신아기업				
	MTS	VRC60LT	25-50 W					
	무선전화기	LG-SD9200		엘지전자(주)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8)

(뒷면)

적재능력	유 류 4,000리터	청 수 1,000리터	화 물 톤	승 객 명	기 타		
기관시설	종 별	형 식	제 작 회사	마 력 용 량	수 량	출 력	회 전 수
	주 기관	8V-92TA	디 트 로 이 드 디 젤	650HP	2		2300
	보 조 기 관	4B3.9G	커 민 스	60HP	1		1800
	발 전 기	PCG4030	대 흥 기 전	30KW/38KVA	1		
	배 전 반						
	소 화 기	K·R			2		
유류소모 기 준 (시간당)	종 별	사 용 유 종		주 연 료 소 모 량	운 활 유 소 모 량		비 고
	주 기관	경 유		135.0 l/H×2			
	보 조 기 관	경 유		11.0 l/H			
승무원 (명)	구 분	갑 판 부	기 관 부	통 신	기 타	계	비 고
	정 원						
	현 원	1	1		1	3	
기 사	사진(측면전경)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19)

[별지 제5호서식]

운 항 명 령 서

제 호

선 명	경남 제 233호			
출항일시	년	월	일	
운항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운항해역				
운항목적				
지시사항				

년 월 일
해양수산과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322호(20)

[별지 제6호서식]

지도선 승무원 직무분담표

직 책	임 무						비고
	입출항시	투 양 묘	인명구조	소 화	방 수	퇴 선	
선 장	(총지휘) 조 타 실	(총지휘) 조 타 실	(총지휘) 조 타 실	(총지휘) 조 타 실	(총지휘) 조 타 실	(총지휘) 조 타 실	
기관장	기관운전	기관운전	기관운전	기관운전	현장지휘 손 전 등	구명부환	
감판장	현장지휘 선수훗줄	현장지휘 양카부이	현장지휘 구명부환	포 말 소 화 기	방 수 포 맥포준비	구명뗏목 투 하	